

제 6 장 세 무 행 정

- 제1절.. 세무행정 관리
- 제2절.. 지방세입 관리
- 제3절.. 과년도 체납세 정리
- 제4절.. 세외수입 관리
- 제5절.. 개별주택가격 산정관리

제1절 세무행정 관리

1. 세입환경

가. 과세물건 현황

- 토 지 : 65.2km² 【전 1.0 / 답 3.8 / 임야 41.5/ 대지 6.7 / 공장 0.5 / 기타 11.7km²】
- 건 축 물 : 83,969건 【주거용 : 69,625건, 일반용 : 14,344건】
 - ※ 주거용 : 69,625건 【단독주택 13,468건/다가구 692건/주상용 4,910건/아파트50,555건】
- 차 량 : 78,302대 【승용 58,579/승합 5,176/화물 13,973/기타 574】
- 법 인 : 2,102개소 【건설 478 / 제조 482 / 서비스 302 / 여객,화물 138 / 기타 702】
- 기 타 : 선박 【44척】 , 골프회원권 【2,352명】 , 면허건수 【15,865건】

나. 세무공무원 기구 및 인력

- 기 구 : 7담당
- 담당별 분장사무
 - 세 무 관 리 : 세정기획 및 총괄, 세무조사, 구세(감면)조례,
 - 재 산 세 : 재산세 과징, 현년도 체납세 정리, 종부세관련 업무, 세표
 - 취득등록세 : 취득세·등록세 과징 및 현년도 체납세 정리
 - 주민자동차 :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면허세, 레저세 과징
 - 세 외 수 입 : 세입금관리 및 통계, 지방세 소인, 과오납금 환부
 - 체 납 정 리 : 과년도 지방세 체납세 정리 및 체납처분, 납세증명 민원
 - 과 표 평 가 :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 과세표준액 결정
- 인 력 : 42명
- 구성현황 : 행정 2(5급 1, 6급 1), 세무 38(6급 6, 7~9급 31), 기능 3]

구분	직급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정 원		42	1	7	12	17	3
현 원		42	1	7	22	8	1	3
증 감		0	0	0	10	△8	△2	0

2. 지방세 과징 일반

가. 조세의 분류

조세	지방세	구 세	재산세, 면허세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주민세(재산분)	보통세
		광역시세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주민세, 농업소득세, 자동차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보통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목적세
	국 세	내국세, 관세	국가 일반재원 조달	
농어촌특별세		농어촌 개발재원 조달		

나. 구민 1인당 담세액[1인당 담세액=결산시점의 징수액÷결산시점의 인구수]

구 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인 구 수(명)	255,798	251,651	255,240	258,805	261,088
지방세액(천원)	146,678,116	110,124,589	115,818,977	134,625,889	121,657,000
담 세 액(천원)	573	437	454	520	466

다. 지방세 과징일정

세 목		납 기	과세대상	비 고	
시 세	취·등록세	신고·수시	1월~12월	과세대상 물건 취득자·등기권리자	
	주 민 세	균 등 분	8/16~8/31	개인, 법인, 개인사업자	균등할
	지 방 소 득 세	수 시 분	1월~12월	종합·양도소득, 특별징수 의무자	소득할
		신고납부	4/1~4/30	법인세할 주민세	소득할
	5/1~5/31		중소세할 주민세	소득할	
	자 동 차 세	신고납부	1/1~6/30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자	
		정 기 분	6월, 12월	자동차·건설기계 소유자	
레 저 세	신고납부	1월~12월	경륜 사업자		
지 역 개 발 세	수 시 분	1월~12월	지하수 채수자		
구 세	재 산 세	정 기 분	7월, 9월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면 허 세	정 기 분	1/16~1/31	행정청 부여 면허 소지자	
		신고납부·수시	1월~12월	면허의 신규·변경	
	주 민 세	재 산 분	7/1~7/31	사업장	
지 방 소 득 세	신고납부·수시	1월~12월	종업원할 : 급여 지급액		

3. 지방세 세무조사

가. 세무조사 실적

(단위 : 법인, 백만원)

조사계획		조사 법인	추징 계		방문조사		서면조사		비율 (B/A)%
법인	세액(A)		법인	세액(B)	법인	세액	법인	세액	
58	606	58	17	423	2	35	15	388	69.8

나. 세무조사 운영

- 부동산 취득 법인 및 3년 이내 미조사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및 탈루 취약 부분 기획조사로 지방세수 확충과 공평과세 구현
- 세무조사에 대한 법인 부담 경감 유도
 - 세무조사 사전 예고제 실시로 협치에 의한 세무조사 시기 조율
 - 인터넷 세무조사 실시로 법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

4. 납세편의시책 운영

가. 납세서비스의 다양화 추진

납 부 경 로	결제수단	운 영 시 간
Cyber 지방세청	계좌이체	07:00 ~ 22:00
	신용카드	07:00 ~ 22:00
	할부금융	07:00 ~ 22:00
자동응답시스템(ARS)	신용카드	07:00 ~ 22:00
CD/ATM 무인수납기(KIOSK)	신용카드	07:00 ~ 22:00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계좌이체	07:00 ~ 22:00
부산은행 가상계좌	금융기관 이체	07:00 ~ 22:00

나. 지방세 홍보

- 다양한 정보통신 매체 활용 홍보
 - 인터넷 홈페이지 배너 설치 및 홍보안 게시를 통한 홍보
 - Cyber지방세청(etax.busan.go.kr)을 통한 각종 세정정보 제공
- 신규입주 공동주택내 현장사무실 운영 : 취득등록세 신고납부 안내

아파트 명	세대수	운영기간	신고접수처리		민원상담	홍보물 배 부
			건 수	금 액		
롯데캐슬디아망	311	1.25 ~ 2.24	622	4,676	152	243
현대힐스테이트	301	5.28 ~ 6.27	602	4,933	103	202
금정산 SK	1,132	8.26 ~ 9.27	2,372	4,001	478	876
쌍용 예가	1,095	10.29 ~ 11.19	2,190	11,042	329	981

제2절 지방세입 관리

1. 지방세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

세 목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			
					목표대	부과대		
지방세	현년도 지방세		139,586	148,969	144,146	103.3	96.8	
	현년도	시세	시세 소계	123,465	131,768	127,526	103.3	96.8
			취득세	30,197	30,997	30,705	101.7	99.1
			등록세	20,610	22,810	22,802	110.6	100.0
			주민세	749	1,051	749	100.0	71.3
			자동차세	12,794	14,450	12,925	101.0	89.4
			레저세	12,164	12,262	12,262	100.8	100.0
			지방소득세	20,947	22,028	20,898	99.8	94.9
			기타세목	26,004	28,170	27,185	104.5	96.5
	구세	구세	구세 소계	16,121	17,201	16,619	103.1	96.6
			면허세	392	410	391	99.7	95.4
			재산세	13,790	14,663	14,112	102.3	96.2
			지방소득세	1,643	1,797	1,797	109.4	100.0
			주민세	296	331	319	107.8	96.4

2. 지방세 징수실적 분석

가. 시세입 동향

- 부동산 거래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취득등록세입의 장기 보합세 유지
- 법인세, 소득세 세율 인하 및 소득 감소로 주민세입의 소폭 감소
- 자동차세, 레저세 등 기타 시세입은 예년대비 평균 진도비 유지

나. 구세입 동향

- 공시지가 변동외의 세액 증감 요인 없어 재산세입의 보합세 유지
- 면허세 및 주민세, 지방소득세입 또한 뚜렷한 증감없이 보합세 유지

제3절 과년도 체납세 정리

1. 체납세 정리실적

(단위 : 백만원, %)

세 목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	
					목표대	부과대
지방세	과년도 총계	1,887	8,319	2,532	134.2	30.4
	과 시 세	1,627	5,920	1,527	93.9	25.8
	과 지방교육세	-	1,273	486	-	-
	과 구 세	260	1,126	519	199.8	46.2

2.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 실적

가. 지방세 체납정리 추진시책

- 체납세 징수를 위한 노력 강화
 - 50만원이상 체납자 전담관리를 위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 편성 운영
 - 고액체납자 특별관리팀 : 총 5명 전담직원 지정⇒2,697건 705백만원 징수
 - 체납차량 번호판 상설영치 기동팀 운영 : 1,551대 702백만원 영치
-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설정·운영
 - 기 간 : 지방세, 세외수입 연2회(5~6월, 11~2월)
 - 내 용 : 고액·고질 체납자 징수독려, 무재산자 결손처분 등
- 실효성 있는 채권확보로 징수율제고
 - 직장인 체납자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직장확인 및 급여압류
 - 금융자산 압류 : 금융연합회 계좌조회 및 예금압류
 - 국세환급금압류 : 세무서 국세 환급금 발생여부 조사 및 채권압류

나. 지방세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 실적

- 지방세 체납처분 실적
 - 독 촉 장 발 부 : 203,526건 292백만원 징수
 - 부동산·차량 등 압류처분 : 7,526건 1,223백만원 징수
 - 차 량 번 호 판 영 치 : 2,108대 567백만원 징수
- 지방세 행정규제(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 등록) : 242건 86백만원 징수

제4절 세외수입 관리

1. 세외수입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

세 목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		
					목표대	부과대	
세 외 수 입	세외수입 총계		32,897	59,254	43,995	133.7	74.2
	현 년 도	시세 외	660	3,360	3,290	498.5	97.9
		구세 외	31,229	41,306	39,483	126.4	95.6
	과 년 도	시세 외	58	751	63	108.6	8.4
		구세 외	950	13,837	1,159	122.0	8.4

2. 세외수입 세입운영

가. 세외수입 세입 극대화를 위한 추진시책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적극 운용(과태료 체납자)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최고 77%)
 - 체납자 체납내역 신용정보기관 등록(1,000만원 · 1년 이상 체납)
 -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500만원 이상 체납)
-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 부동산 공매예고로 자진납부 유도
 - 배당실익 등 권리분석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
- 징수 불가능한 세외수입의 결손처분 확행
- 세외수입 징수실적 정기적 분석 및 징수보고회(년4회) 개최
- 분임징수관 부서 세외수입 체납처분 기법 수시 교육 실시

나. 세외수입 체납처분 실적

- 재산압류 : 부동산 1,827백만원, 차량 4,189건 736백만원
- 세외수입 체납자 독촉고지서 일괄발송 : 402건 113백만원 징수
- 과년도 세외수입 고액체납자(100만원 이상) 세무과내 전담 징수체계 구축 운영

다. 세외수입 과징체계의 지속적인 개선

- 세외수입 전자수납의 확대 ⇒ 2011년 부터 세외수입 전과목 전자수납체계 구축
- 세외수입 징수절차법(안) 제정 ⇒ 2012년중, 세외수입 체납처분의 법적 근거 마련

제5절 개별주택 가격 산정 관리

가. 개별주택 가격 산정 및 공시 현황

(단위 : 호, 백만원)

구 분	조사 및 산정		공 시		비 고
	주택수	주택가격	주택수	주택가격	
2010년	18,216	1,842,464	17,135	1,791,752	
2009년	18,238	1,467,656	17,157	1,427,102	
증감비율	-0.1%	25.5%	-0.1%	25.6%	

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정·공시 체계 구축

- 2009년 개별주택 가격 산정 및 공시 : 총 18,216호 산정, 17,135호 공시
- 개별주택 산정가격 검증 : 2회(2/18~3/4 7/27~8/3)
- 2010년 차질 없는 개별주택가격 평가를 위한 추진사항
 - 주택특성 조사 및 평가계획 수립 : 2회(1.1기준, 6.1.기준)
 - 전년대비 10%이상 가격 증감 주택 조사 및 분석 : 총101호
 - 비교표준주택 선정 : 854호
 - 개별주택 산정가격 검증 : 총2회(2009. 2.18~3.4, 7.27~8.3)
 - 주택가격열람 의견접수 및 처리 : 총 10건
 - 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총 10건
- 주택가격 열람 민원을 위한 편의시책
 - 주택가격현황도면을 활용한 입체적 민원서비스 제공
 - 주택가격 민원상담 전용 창구 운영 : 3회
 - 인터넷 열람 및 이의신청 시스템 운영

다. 주택가격 산정 체계 개선

- 정확한 부동산 가치를 적기 반영하는 평가체계 개선
- 건물 과표의 수시조정을 통한 실거래가의 적시 반영
- 시설물 및 기타 물건 과표의 단계적 현실화 추진